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 현황 연구*

홍 은 택	김 현 진	박 수 현	최 기 흥†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박사통합과정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석사과정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근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EBP)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심리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다. 근거-기반 심리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을 규정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다. 한국의 경우, 심리서비스 관련으로 등록된 민간자격의 수가 3천 개 이상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들이 비전문적이고 비윤리적인 심리서비스에 노출될 위험을 높인다.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에 대한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격에 명시된 심리서비스 유형, 제공 대상 및 요구되는 취득 요건 등 구체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국내의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 자격의 취득 요건을 해외 심리서비스 자격요건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은 심리치료/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심리서비스 영역을 직무영역에 포함하였으며, 상당수가 정신질환자 및 아동 등 취약군을 서비스대상자로 명시하였다. 또한 국내 대다수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교육 및 수련시간 등 자격요건이 해외의 법령으로 규정된 심리전문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제 수준의 심리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자격과 그렇지 못한 자격을 구별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격을 규제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민간자격, 심리서비스, 심리사, 법적 규제, 교육 및 수련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HI21C026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최기흥 /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 E-mail: kchoi.psynlaw@gmail.com

Copyright ©2023,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의 정신건강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고질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집계된 국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는 2000년과 비교하였을 때 46%가량 증가한 수치이다(OECD, 2021a). COVID-19 장기 유행 국면에 들어선 이후 국내 정신건강 지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다소 완화된 이후에 실시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우울, 자살사고 등의 주요 정신건강 지표들이 코로나 유행 이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2). 이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건수는 COVID-19 유행 이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함영훈, 2021), 심리상담, 심리평가 및 정신건강정보 제공 등 심리학 기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였다(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2). 하지만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현장에 부족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1). 심리서비스의 근거-기반 실천(evidence based practice, EBP)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내담자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긍정적인 치료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임상적 전문성이기에(APA, 2006), 국민의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심리전문가 인력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2016년부터 제1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의 분야별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 공인 심리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수는

2021년 기준 1급 1823명 2급 1428명으로(보건복지부, 2021) 1000명 당 0.065명 수준에 머물러 OECD 국가의 심리사(psychologist) 빈도 평균인 1000명 당 0.53명(OECD, 2021b)에 크게 미달한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제고, 자격관리 등 전문성 있는 인력확충에 대한 과제가 제시되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 심리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관리가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국가 및 주정부 법률로 심리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하여 왔으며(Siegel & DeMers, 2016),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심리서비스 자격제도가 규정되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리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제공되고 있다(Suzuki, 2022; Tu & Jin, 2016). 현재 한국의 경우 일부 국가자격(정신건강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을 제외한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은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은 3,000여종이 넘으며 그 중 대다수의 자격은 윤리교육 및 실무, 수련을 자격요건에 포함하지 않는다(원성두, 장은진, 2022). 이는 민간자격의 발급 및 유지과정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문제이며, 심리서비스를 포함한 대다수 민간자격에 있어 실제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동인, 2019; 조인식, 2021). 특히 정신건강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심리서비스 영역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이 난립하는 경우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자격자가

양산되어 국민에게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Castonguay et al., 2010). 국내 다수의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이 허술한 자격요건을 가진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김인규, 2018; 노은빈 외, 2022; 박종규 외, 2022; 장은진 외, 2019), 실제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발생한 성추행, 사기, 증상 악화는 오랜 기간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강창욱 외, 2022; 이내규, 2019; 최유리, 2016).

국내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특징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전반의 자격요건 및 직무내용의 현황을 조사한 후 국내 민간서비스 자격요건이 적절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기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일련의 연구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서비스 제공 대상, 자격요건을 일괄 조사하여 현황을 정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현황을 정리한 연구는 그 대상이 심리상담 관련 자격에 한정되었으며(김인규, 장숙희, 2019; 윤소라, 장진경, 2021), 심리평가 및 검사, 심리교육 등 전반적인 심리서비스를 포괄하는 민간자격 연구는 이뤄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민간자격 중 심리평가,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상담 등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격의 서비스 대상자 유형, 심리서비스 유형 및 자격요건을 조사 및 코딩한 후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현황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해당 결과를 법으로 규정된 해외 심리서비스 자격요건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실

태에 대하여 논함과 동시에 심리서비스 관련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본 연구의 세부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의 심리서비스 자격 규제 현황 및 자격요건의 사례를 정리한 후 국제수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이 명시하는 대상자 유형 및 심리서비스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이 명시하는 자격요건(학위, 교육기간, 수련/실습, 자격시험, 보수교육)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제 수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과 조사된 국내 민간자격 요건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방 법

국제 수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 기준 설정

본 연구에서는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국내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해외 심리서비스 자격요건의 현황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국내 민간자격의 자격요건 비교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심리전문가 규제 현황에 대한 설문 연구(Kim et al., 2022) 및 국제 기준의 해외 심리전문가 자격을 제시한 연구(노은빈 외, 2022)를 중심으로 심리서비스 법적 규제의 해외 현황과 함께 미국, 유럽 등 공인된 심리전문가가 존재하는 국가의 자격요건을 정리할 것이다.

자료수집 대상

본 연구는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에 근거하여 심리서비스를 “심리학 지식과 원리에 근거하여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심리연구 및 개발,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스”로 정의하였고, 해당 직무 내용에 포함하는 자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심리적 문제”의 경우 정신건강적 의미의 심리적 고통감에 한정 지어 분석하였다. “심리서비스”는 상담뿐 아니라 검사,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직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전에 수행된 민간자격 관련 선행 연구(김인규, 장숙희, 2019; 윤소라, 장진경, 2021; 조성진 외, 2022)와 유사한 직무키워드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업데이트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_민간자격정보’ 전체 원자료에서 시작하여, 포함 및 제외 조건에 따라 키워드 기반으로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을 필터링하였다. 해당 원자료는 심리학 관련 민간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등록 및 폐지 민간자격의 자격명, 등급명, 자격개요 및 등급별 직무내용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포함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정보에 ‘심리’라는 키워드가 최소 한 번 이상 포함되었을 것이라 가정하여 특정 자격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서 ‘심리’라는 키워드를 최소 1회 이상 포함하는 자격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둘째, ‘자격명’, ‘자격개요’ 그

리고 ‘등급별직무내용’에 심리서비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검사’, ‘평가’, ‘상담’, ‘치료’, ‘재활’, ‘교육’이라는 키워드 중 하나 이상을 1회 이상 포함하는 자격만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심리학 관련 ‘자문’, ‘실태조사’ 그리고 ‘센터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격 관련 설명에서 앞서 언급한 키워드에 포함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해당 키워드는 포함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의 범위를 좁히고 ‘정신건강적 의미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자격에 초점을 두기 위해 (1) 심리학 지식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직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2) 예술, 동물 등 매체를 활용한 상담을 포함하는 경우 (3) 진로 상담만을 제공하는 경우 (4) 인권 교육, 부모 교육, 재난안전관리 지도와 같이 심리적 어려움과 맞닿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5) MBTI, DISC, 애니어그램과 같이 제공하는 심리검사가 심리적 어려움이 아닌 단순 성격 평가에 그치는 경우 (6) 전문심리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타로, 명리, 사주, 최면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세한 제외 사유 및 자격 예시는 부록 A에서 확인 가능하다. 둘째, 분석의 범위를 좁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2022년에 게시된 공공데이터포털의 ‘한국직업능력연구원_민간자격취득현황’ 자료에 반영된 가장 최신 년도의 연간 발행 건수가 50건 미만인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정 자격이 하나 이상의 급수를 포함할 경우, 모든 급수의 발행 건수를 합산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분석을 계획하

였기에, 자격 홈페이지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거나 홈페이지상에서 자격취득 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는 총 134건의 민간 자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분석

2022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원자료에 등록된 전체 민간자격은 총 62,469건이었다.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우선 PyCharm Community Edition 프로그램의 pandas 라이브러리(McKinney, 2010)를 사용하여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자격을 제거하는 ‘자동 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저자들이 자격 관련 정보를 읽고 제외 기준에 해당하나 자동 코딩 방식으로 제거되지 못한 자격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직접 코딩’ 방식을 사용하였다. ‘직접 코딩’의 경우 원자료에 등록된 정보뿐 아니라 해당 자격을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기술된 정보 또한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사용한 상세 키워드 및 예시 코드는 부록 D에서 확인 가능하며, 분석 대상 선정 전처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최종적으로, 본

대상군

원자료에 명시된 대상군은 자동 코딩한 이후 저자들이 직접 자격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상군의 분류는 ‘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으로 하였다. 대상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 ‘일반’으로 코딩하였다.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할 경우, 각각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으로 코딩하였다. 덧붙여, 하나의 자격이 두 가지 이상의 대상군을 명시한 경우 기존 코딩 내역에 덧붙여 ‘일반’으로 추가 코딩하였다. 세부적인 기준 키워드는 부록 B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자격에서 심리적 고통감의 수준을 기술한 방식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은 대상군의 심리적 고통감을 다양한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다. 해당 현황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진단명 제시’, ‘심리장애’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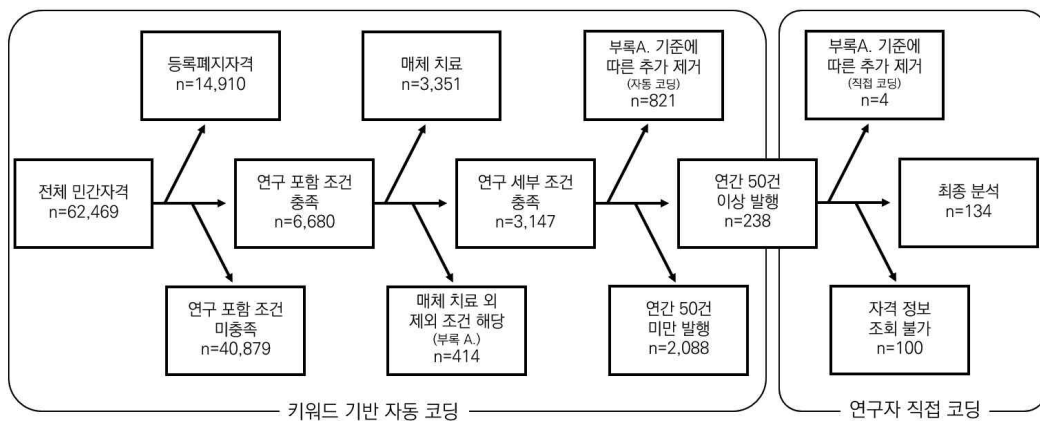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터 전처리 과정

‘심리적 어려움’ 세 가지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진단명 제시’ 수준은 중독, 공황장애, 우울증 등 진단명이나 정신질환 증상이 제시되거나, 직접적으로 ‘정신병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심각도를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자주 언급되는 우울 및 불안의 경우, ‘우울증’, ‘우울장애’, ‘혹은 불안장애’가 직접 명시된 경우에만 ‘진단명 제시’ 수준으로 코딩하였고, 단순히 증상만을 명시한 경우이거나 ‘심리적 불안장애’ 등 정신과 진단명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키워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심리장애’로 코딩하였다. ‘심리적 어려움’ 수준의 경우 심리적 ‘고통’, ‘어려움’, ‘문제’, ‘부적응’ 키워드를 사용하여 심리적 문제를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심리적 고통감의 수준에 대한 코딩은 저자들이 원자료의 자격 개요 및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격 정보를 읽고, 위 기준에 따라 직접 코딩하였다. 하나의 자격 내에서 두 수준 이상의 키워드가 기술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코딩하였다. 덧붙여, 자살, 폭력, 재난 피해자를 다루는 위기집단과 가족상담, 학교폭력을 다루는 특수한 집단을 다루는 자격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조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코딩을 진행하였다.

직무 내용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에 따르면, 심리서비스에 포함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2) 심리상담/심리치료 및 심리재활 (3) 심리교육 (4) 심리자문 (5) 심리연구 및 개발 (6) 심리서비스제공기관 운영 (7) 그 밖에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심리서비

스. 원자료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심리서비스 직무내용(검사/평가, 상담/치료/재활, 교육/코칭, 자문, 연구/개발, 센터 운영/운영)과 관련된 키워드를 포함할 경우 일차적으로 자동 코딩을 진행하였다. 이후 저자들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격 정보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직접 검토 및 수정하였다. 또한, 심리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슈퍼비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무 중 ‘슈퍼비전’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도 코딩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문’의 의미는 기업체 또는 정책 결정 상황에서 심리학적 지식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며, 수련생에 대한 교육지도 및 자문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자문’이 아닌 ‘슈퍼비전’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키워드가 사용된 자격 중 직무기술 맥락상 학술적 의미의 연구 및 개발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계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격이 상당수 존재하였기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로 분리하여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개발’은 학술적 의미의 연구 및 개발에 한정된다. 하나의 자격 내에서 다수의 등급(예: 1급, 2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격의 최고위 자격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코딩 및 검토 과정에서, 해당 자격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코딩하지 않았다.

자격 요구조건

대다수 민간자격의 자격 요구조건이 원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저자들이 자격취득 절차가 기술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필요한 기준(학위, 교육기간, 실무 및 수련 요구사항, 필기시험 여부, 면접 여부, 보수교육 존재 여부)을 직접 코딩하였다. 하나의 자격 내에서 여러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격의 최하위 자격에 필요한 자격 기준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예: 1급, 2급, 3급이 명시된 경우 3급을 기준으로 코딩을 진행하였음).

교육기간의 경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고졸, 학위 제한 없음)의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의 교육기간을 분리하여 코딩하였다.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학위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기간만을 코딩하였다. 교육 요건으로 학위를 명시함과 동시에 학위 내에서 수강해야 할 필수과목을 부가적으로 제시한 경우, 해당 과목은 학위에 포함되었다고 고려하여 별도의 교육기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졸 이하의 학위가 요구된다면 해당 자격을 위해 필요한 총 교육기간을 코딩하였다. 만약 하나의 자격이 여러 학위요건을 명시한다면 학사를 기준으로 코딩하였으며, 학위대체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위 및 훈련, 시험 및 보수교육을 모두 요구조건으로 명시한 민간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이 국제 심리서비스 전문가 자격에 부합하는 요건을 가졌는지 자격요건 세부조항에 관한 사후분석을 수행하였다.

결 과

해외 심리서비스 직역의 법적 규제 및 국제수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

국내 민간자격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해

외 심리서비스를 위한 법적 자격요건에 대해 먼저 제시하였다. Kim 등(2022)은 APA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심리연맹(Global Psychology Alliance, GPA)과 아시아퍼시픽심리연맹(Asia Pacific Psychology Alliance, APPA)의 회원국들이 명시한 심리서비스 관련 법적 규제의 세계적 추세를 조사하였다. 55개국 중 44개국(80%)에서 심리서비스 관련 직업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며, 자격취득과 관련된 교육 이수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심리학 관련 직군의 87%가 심리학 석사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요하였다. 특히 임상심리학자(clinical psychologists)와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로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각 7.4년($SD = 1.6$)과 7.8년($SD = 2.1$)의 심리학 전공 교육이 요구되고 있었다. 실습 및 수련의 경우, 법적으로 규제되는 심리학 분야 직업의 95%에서 의무적 수련/실습을 필요로 하며,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clinical psychologist)와 심리치료 전문가(psychotherapist)의 경우 각각 100%와 90%가 의무적 수련을 규정하고 있었다.

노은빈 외(2022)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및 수련기준을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 박사 학위(인턴십 1년 포함)취득 이후, 박사 후 과정 동안 2,000시간의 수련을 추가로 이수한 뒤에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캐나다 역시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모든 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와 3,000시간 이상의 수련 이수를 요구하였다. 영국에서는 심리학 석사학위 취득 및 1년 이상의 수련 후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공인된 임상심리사로서 공공병원 내 심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사 학위 취득이 필수적이었다. 일본의 경우 심리학 석사 학위취득 후 30시간의 연수를 받거나, 심리학 학사학위 취

득 후 2년 이상의 인증된 기관에서의 수련을 이수한 뒤 30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공인심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호주의 경우,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 후 1,500시간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였다.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는 자격 갱신을 위한 주기적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유럽심리학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EFPA)에 소속된 유럽 내 37개 국가의 경우 승인된 국제 자격 기준인 유로싸이(EuroPsy)에 따라 심리학 실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행되고 있었다(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2013).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과 국가 기관에 의해 인증된 시설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지도하 수련을 이수하는 것이 심리전문가로서 실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자격요건이며, 학사학위만으로는 독립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격취득 후에도 갱신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요구되었다.

위의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심리서비스 실무 수행을 위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과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 1) 심리학 전공 석사+박사 혹은 학사+석사학위(심리학 기초 및 연구방법론 수강 필수), 2) 1년 이상의 검증된 훈련기관에서의 지도하 실습 및 수련, 3) 국가시험 응시 및 4) 자격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위에 기술한 네 가지 자격요건은 심리전문가 자격을 공인하기 위한 최소 요건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국내 민간자격의 서비스 대상군

총 134건의 자격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시한 자격은 43건(32.09%), 노인 대상은 46건(32.84%), 장애인 대상은 6건(4.48%)으로 나타났다. 대상군이 '일반'으로 코딩된 자격은 총 88건(65.67%)으로, 34.33%의 자격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군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어려움의 기술 방식과 관련해서는, '진단명 제시' 수준으로 기술한 자격이 12건(8.96%), '심리장애' 수준으로 기술한 자격이 35건(26.12%), '심리적 고통감' 수준으로 기술한 자격이 45건(33.58%)으로 나타났다. 특수 집단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경우 직무 관련 설명에서 '자살'을 직접 명시한 자격이 4건(2.99%), '재난 후유증'을 명시한 자격이 3건(2.24%), '학교폭력을 제외한 폭력'을 명시한 자격이 4건(2.9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직접 명시한 자격은 4건(2.99%), 가족상담을 직접 명시한 자격은 16건(9.76%)으로 나타났다.

국내 민간자격의 직무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검사 및 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자격은 68건(50.74%), 상담, 치료, 재활을 포함한 자격은 132건(98.51%), 교육을 포함한 자격은 58건(43.28%), 자문을 포함한 자격은 9건(6.72%), 슈퍼비전을 포함한 자격은 22건(16.42%),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자격은 16건(11.94%),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을 포함한 자격은 34건(25.37%), 센터 운영을 포함한 자격은 22건(16.42%)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직무 내용의 빈도 및 비율

직무 내용	검사 /평가	상담/치료/ 재활	교육	자문	슈퍼비전	연구 /개발	프로그램 개발	센터 운영
빈도(%)	68건 (50.74%)	132건 (98.51%)	58건 (43.28%)	9건 (6.72%)	22건 (16.42%)	16건 (11.94%)	34건 (25.37%)	22건 (16.42%)

국내 민간자격의 학위 및 학위 대체 요건

총 134건의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 가운데, 95건(70.90%)의 자격이 학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고등학교 졸업을 자격요건으로 설정한 자격은 16건(11.94%)이며, 심리학 관련 전문학사를 요구하는 자격은 4건(2.99%)이었다. 심리학 유관 전공의 경우 상담/교육/사회복지/가족/특수교육/교정학 등의 학문으로 정의하였으며, 심리학 유관 전공에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자격은 12건(8.96%)이었다. 134개 자격증 가운데 심리학 전공에서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자격은 1건이었으며, (사)한국심리학회와 임상심리전문가(2013-1527) 자격이 임상심리학에서의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한국심리학회의 상담심리사(2008-0400)의 경우 상담 관련 학사 혹은 석사학위를 요구함과 동시에 심리통계 및 심리치료이론 등 심리학 이수과목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심리학을 포함한 심리학 유관 전공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자격은 8건(5.97%)이었으며 전문학사를 포함하여 심리학 또는 상담학 관련 전공에서의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자격증은 15건(11.20%)으로, 심리학 또는 상담학 관련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모두 해당)를 요구하는 자격은 총 23건(17.16%)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관련 학위요건이 있는 자격의 상당수가 실무경험 등 학위를

대체할 수 있는 예외 조건들을 명시해두고 있었다(표 2).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자격의 필요 교육시간

고졸 이하의 학위를 요구한 자격 109개 가운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명시해두지 않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자격증은 총 7건(5.22%)이었으며, 나머지 102건(76.12%)이 자격취득을 위해 요구하는 평균 교육시간은 32.16시간 ($SD = 31.39$)이었다. 구간별로는 1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의 교육시간을 요구하는 자격이 74건(55.22%)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2).

국내 민간자격의 검정 및 보수교육요건

본 논문에서는 해외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증의 검정 기준을 고려하여, 1) 필기시험, 2) 실습 및 수련, 3) 면접, 4)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들의 검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34건 중 119건(88.81%)의 자격이 필기시험 합격을 요구하였고, 22건의 자격(16.42%)이 실습 또는 수련 과정을 요구하였으며, 14건(10.45%)이 자격 검정 과정에서 면접을 포함하였다. 또한 18건(13.44%)의 자격이 자격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표 2. 학위대체요건

자격명	등록번호	등록기관	학위요건	학위대체요건
전문상담사	2008-0420	(사)한국상담학회	학부/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영역 교과 이수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심리상담사	2012-1425	한국심리상담사협회	심리학 관련 학문에서 학사 이상	협회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온라인 20시간 이수
상담심리사	2016-003745	한국치유상담협회	심리학 관련 학문에서 학사 이상	상담업무 1년 이상 종사
아동자극수용 발달전문가	2016-003511	한국pnp전문가협회	심리학 관련 학문에서 학사 이상	관련 종사자
상담전문가	2020-002087	사단법인한국 청소년상담학회	상담학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	(상담관련 석사의 경우) 상담현장 실무경력 5년 (그 외) 상담/교육 경력 20년 이상, 해당 학회 인정 상담자격 소지자
노인상담심리사	2021-002066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 전문학사 이상	노인상담분야 실무 경험 3년 이상
상담심리사	2013-1060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 전문학사 이상	상담분야실무경험 3년 이상
노인심리상담사	2016-000186	(사)한국심성교육 개발원	심리학 관련 학문에서 학사 이상	해당 교육기관에서 90시간 이수
심리상담사	2012-0239	사단법인한국심리 상담전문학회	심리학 관련 학문에서 학사 이상	기관 내 교육 40시간
전문상담사	2018-003091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상담학 학사 이상	인증수련기관에서 12학점 이수
군상담심리사	2015-000921	사단법인대한군상담학회	상담학 학사 이상	(전문학사 취득자일 경우) 군경력 5년 필요 (고등학교 졸업일 경우) 군경력 20년 필요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2014-2177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상담학 석사 이상	(상담관련분야 석사 재학중일 경우)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 또는 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경우) 상담실무경력 2년 이상 (상담관련분야 외 학사학위 취득한 경우) 상담실무경력 3년 이상 (사회복지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상담실무경력 필요
상담전문가	2020-002087	사단법인한국 청소년상담학회	상담관련학문 (심리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 박사 수료	(상담관련분야 석사 경우) 상담현장 실무경력 5년 이상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없을 경우) 상담/교육 경력 20년 이상, 학회에서 인정하는 상담 자격을 소지

학위 외 교육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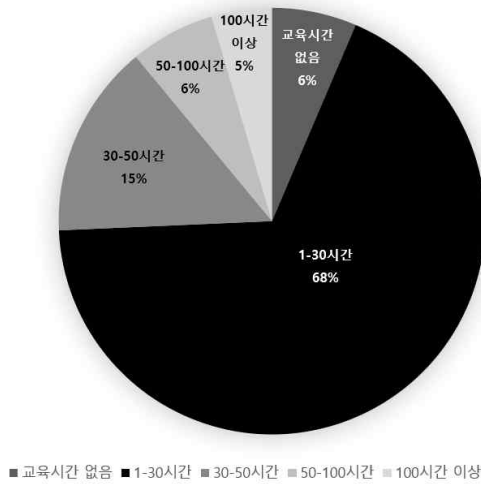


그림 2. 학위 외 교육시간(요구 학위 고졸 이하)

해외자격요건과 국내민간자격과의 비교

‘해외 심리서비스 직역의 법적 규제 및 국제수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경우 심리서비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검증된 기관에서의 1년 이상의 실습 및 수련, 자격시험 통과가 필요하며, 자격증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증 갱신을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 가운데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증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발급 수가 연 50건 이상인 민간자격 134건 가운데 8건(5.97%)이 심리학 관련 전공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였으며, 134건 중 22건(16.42%)이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실습 및 수련을 필요로 하며, 119건(88.81%)이 필기시험을 요구하였으며, 18건(13.43%)이 자격증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요구하였다. 석

사 이상의 심리학 학위, 실습 및 수련, 자격시험 응시, 보수교육, 해당 4가지 조건을 모두 요구하는 자격은 134건 가운데 6건만 해당하였으며, 해당 자격증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상세를 2차적으로 검토하였다.

2차 검토시에는 1) 훈련기관(수련기관)의 신뢰성이 보장되었는지, 즉 공인된 기관이나 병원에서 수련이 이루어지는지 2) 교육 과목이 공인된 기관에서 심리전문가 양성에 적합하게 이수되고 있는지 3) 예외조건이 조항 일부에 포함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항목별로 검토하여 평가하였다(표 3).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2014-2177)의 경우, 업무가 인터넷중독 개입 및 예방에 한정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제외하고, 보편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5건의 민간자격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민간자격은 다음과 같다. (사)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2008-0400), (사)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2013-1527), (사)한국청소년상담학회의 상담전문가(2020-002087), (사)한국상담학회의 전문상담사(2008-0420), (사)한국상담진흥대학원협회의 심리상담사(2019-003966).

첫째로, 훈련기관(수련기관) 및 내용을 확인하였다. (사)한국심리학회 발급 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및 상담심리사의 경우 병원 및 대학교 상담시설 등 학회로부터 독립된 기관만이 수련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이외의 다른 모든 자격은 발급기관 내부에서 개설하였거나 내부에서만 승인을 받은 기관도 수련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므로, 세척에 나온 내부 기관의 승인 및 검증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수련기간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가 3년(3000시간 이상), 상담심리사 및 전문상담사가 1년(150시간 이상)으로

표 3. 선별된 민간지적 항목별 세부 평가

검토부분	임상심리전문가 (2013-1527)	상담심리사* (2008-0400)	상담전문가* (2020-002087)	진료상담사* (2014-2177)	심리상담사* (2019-005966)
수련과정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2조수련기관 및 필수수련기관: 수련기관은 임상심리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 및 의원,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단, 수련 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의 수련은 아래 3조에서 규정된 필수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수련기관은 임상심리전문가 전임 근무 기관	제2조 (수련 기관): 수련기관은 지적 감정위원회에서 적절하다고 인정된 상담관련기관을 말한다. 상담경력은 본 학회 1급 추수련감독자 감독 하의 상담 경력만 인정한다.*수련기관의 예: 학교 상담실, 공공기관 상담실, 상담심리전문가가 제직하는 상담기관, 정신병원	상담사수련 및 사례연구 규정제17조수련인증기관의 인증: 4. 수련인증기관의 인증: 상담과 교육으로 다양한 상담과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수련생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수련인증기관은 지역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 상담수련위원장, 자력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된 수련기관 인증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회장이 개설을 승인한다.	제6조 [수련기관]1. 수련기관이 전문 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려면 본 학회로부터 교육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2. 교육연수기관에서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수련 내용 및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연수위원회의 상담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과 그 결과물 교육연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상수련 기관)본 학회의 지정하는 기관으로 회원회가 개설 상담관련센터, 사립자문상담소 등이 있는 상담기관(자격소지자가 근무하고, 수련감독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수련감독 2인 이상 추천)
수련과정	3,000시간(3년): 심리치료, 심리평가, 연구활동, 학술/연수활동, 윤리교육 포함	1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평가, 사례 발표, 학술/연구활동	750시간(1년, 이론교육 500시간 포함: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지도감독, 교육연수	200시간(1년): 개인상담(심리검사 활용), 집단상담, 학술연수활동	150시간: 개인상담, 집단 또는 가족상담, 학술세미나 참석
필수과목 인정범위	대학원과정 과목이수만 인정 임상관련과목 3과목 9학점 이상, 방법론관련 기초 과목을 1과목 3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임상관련 각 과목에는 다음의 세 영역에 대해 각각 1과목 3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정신병리: 정신병리학, 고급 이상심리학 등, 심리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인지치료, 인지행동치료, 재활심리치료 등, 심리평가(또는 진단): 심리진단, 심리평가, 고급심리평가, 신경심리평가, 행동평가 등	역사 및 학사과정 과목이수 인정 (대학원) 상담관련 과목: 매체를 중심으로 한 과목이 아닌 언어를 기반으로 한 상담과목으로써, 심리치료이론, 집단상담, 상담방법, 상담면접,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정신병리, 심리평가, 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진로상담, 아동상담, 상담윤리 등(중 4과목 이상 이수), 기초과목: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실험설계, 동기와 정서, 고급 성격심리학, 고급사회심리학, 고급 발달 심리학 등. (중 1과목 이상 이수)	역사, 청소년이카데미, 수련인증기관, 대학원, 평생교육원, 연수원 등에서 이수한 이론과목 인정 필수과목: 심리 및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철학, 집단상담, 가족치료, 심리진단, 심리평가 등 180시간 이수 선택과목: 청소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복지상담, 위기상담, 예술심리상담, 이상심리, 성격심리, 중독상담, 감정코칭, 비폭력대화, 심리평가, 심리평가, 상담연구세미나, 상담사례실습 및 지도 등 총 320시간 이수	교육연수기관, 석사 및 학사과정 과목이수 인정 1.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2. 대학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5년 이전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협의의 소속 회원교, 임상수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 인정 개인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가족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평가, 발달심리 또는 인간발달
예외조항	박사학위(임상심리학 전공) 과정의 경우 2년, 박사학위 취득한 경우 1년의 수련과정을 지친 후 취득 가능.	2급의 경우 석사과목 수강 대신 상담 학사학위 취득한 경우(학부과정 중 상담3과목, 기초 3과목 수강 필수) 2년(24개월)상담경력이 있으면 취득 가능. 상담 비전공자인 경우에도 취득 가능하였으나, 2018년 이후로 조건이 변경되어 불가능해짐.	2급의 경우 석사과목 수강 대신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 및 대학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시 취득 가능. 본 학회에서 발급한 1급 상담사 자격 2개 이상과 전문상담사 자격 2개 이상 소지한 자(상담사 자격의 경우 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 조항이 있음).	2급의 경우 석사과목 수강 대신 교육연수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 및 대학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시 취득 가능. 자격검정위원회 인정 검사(Webster, MMPI, Rorschach 등) 외의 심리검사 도 전체 검사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수련요건에 포함.	임상수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교육 인정.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낮은 급수 기준으로 세칙 명시

수련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였으며, 상담전문가 및 심리상담사가 각 250시간(750시간에서 이론 강의 시간 제외), 150시간 이상을 요구하였다. 모든 자격증에서 수련 항목으로 심리치료 혹은 상담을 포함하였으나, 심리평가 및 검사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 및 상담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수련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 전문상담사의 경우 개인상담 수련요건 내에 '심리검사 활용'이 표기되어 있으나,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심리검사(Wechsler, MMPI, Rorschach 등) 외의 검사도 전체 검사 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요건에 포함을 허용하는 등의 조항이 명시되었다. 상담전문가의 경우, 심리검사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둘째로 수강 필수과목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대학원 과정에 한하여 필수과목을 인정하며, 상담심리사의 경우 대학원 및 학부에서 이루어진 필수과목 수강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상담전문가, 전문상담가 및 심리상담사의 경우 아카데미, 교육연수기관 등 자체 기관 내에서의 과목이수를 대학원 및 학부 교육과정에 준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타 자격의 경우 공인된 대학기관에서의 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내부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이 신뢰롭게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즉 대학(원)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외조항을 살펴보았다. 임상심리전문가의 경우 기존 3년 수련과정을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2년, 박사졸업생의 경우 1년으로 단축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였다. 즉 박사졸업생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요구하며 연구전문성과 더불어 실무전문성을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상담 학사학위자의 경우에도 2년(기존 석사학위자 1년) 경력이 있다면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비전공자도 상담심리사 2급 취득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로 학회 정관이 변경되어 현재는 입회가 허가되지 않아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다. 상담전문가, 전문상담가 및 심리상담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하였듯 1-2년 간의 교육기간 및 내용을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 및 자체 기관에서의 필수과목 수강이 학위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명시되었다.

위와 같은 사후분석 절차를 거쳤을 때, 국제 수준의 심리전문가 요건(석사 이상의 심리학 학위, 검증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습 및 수련, 자격시험 응시, 보수교육)을 충족하는 민간자격은 (사)한국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2013-1527) 및 상담심리사(2008-0400) 1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자격증의 경우 대학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수강하여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위의 두 자격의 교육과정 요건과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자체 교육 및 수련인증과정이 국제수준에 적합한 심리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신뢰도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각 자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년의 취득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연 취득자 수는 연 누적인원 40,782명 중 223명, 즉 전체의 0.5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 개인이 복수의 자격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때, 실제 취득자 수는 계산된 취득자 수보다 적을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의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제공 서비스 영역 및 세부 자격요건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해외의 심리서비스 관련 직역 규제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한 후 해외와 국내의 심리서비스 자격을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실태를 고찰하였다.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은 심리상담/치료/재활, 심리평가,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센터운영, 슈퍼비전, 연구 등 다양한 심리서비스 영역을 직무내용에 포함하였다.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대다수가 자격명칭에 ‘심리상담’, ‘상담’을 포함하기에 해당 자격 직무가 (심리)상담만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은 ‘심리서비스’보다는 ‘심리상담’이라는 용어에 친숙하기에, 심리 관련 서비스를 규명하는데 있어 ‘심리상담’이란 용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박철형 외, 2022). 그러나 조사된 자격 중 절반 가량의 자격은 심리검사/평가(68건) 및 심리교육(58건)을 자격 직무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심리자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심리서비스 직무를 포함하고 있기에, ‘심리상담’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전반적인 심리학적 서비스를 규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심리상담/치료/재활의 과정에서 종종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평가도구를 실시 및 해석하며 정신건강 정보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심리평가 및 심리교육 등의 심리서비스 역시 ‘심리상담’ 범주 내에서 혼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각 심리서비스 부문은 별도로 구분되는 영역이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적합한 별도의 훈련 및 수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리평가(psychological assessment)는 심리검사, 행동관찰 및 면담 등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통합적인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행위이며(Anderson et al., 1980; Goldstein & Hersen, 2000) 심리평가를 위해서는 심리평가의 학문적 근거, 실시, 채점 및 해석에 대한 교육 및 슈퍼바이저의 감독 하에 실제로 검사를 수행하고 해석하는 수련과정을 거쳐야 한다(Wright et al., 2021). 심리교육(psychoeducation)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 및 가족에게 정신질환의 원인, 특징, 치료 및 예방, 위기관리 등 심리학적 기술을 가르치는 행위로, 심리교육에 특화된 심리학 기반의 교육 및 수련과정이 필수적이다(Edward Watkins, 1985). 추후 심리서비스 관련 자격요건을 구성하는 법령에서는 심리서비스 각 영역을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며, 각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훈련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 중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폭력 및 트라우마 피해자, 정신질환 당사자 등을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집단의 경우 비윤리적 서비스로 인한 언어/신체폭력 및 방치,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등 증상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취약하기에, 해당 집단을 서비스 대상으로 명시하는 자격은 한층 더 엄격하고 전문적인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취약군 대상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경우 수련을 요구하지 않으며 30시간 미만의 교육 시간과 필기시험만을 요건으로 제시하는 등 전문성 및 윤리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심리서비스 자격이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 및 정신질환자 등 취약층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교육 상담 등’과 관련되는 분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경우, 정신질환자등의 심리평가 및 심리교육)’와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 신설을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격 중에서 ‘정신질환자’를 직접 명시한 자격은 없었으나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직접적인 진단명을 명시한 자격증이 12건, ‘심리장애’, ‘정서장애’ 수준으로 기술한 자격이 35건 있었으며, 시행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8년 12월 이후에도 정서장애(심리상담사, 등록번호 2019-001276), 심리적 장애(상담전문가, 등록번호 2020-002087)를 대상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한 민간자격이 등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서 및 불안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 범주의 대상자가 공인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아닌 관련 민간자격자에게 상담 및 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명을 자격직무에 명시한 민간자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위 및 교육기간, 실무 및 수련, 시험, 보수교육 등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자격 요구조건을 분석한 결과, 자격 간 요구조건의 편차가 크며 상당수의 자격이 최소한의 교육과 시험만으로도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임을 확인하였다. 134건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중 95건(70.90%)이 학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학사 이상의 교육연한을 요구

하는 자격의 경우 중 상당수는 실습을 학위 대체요건으로 제시하였다(표 2). 절반 정도의 자격(81건)은 30시간 미만의 교육만을 요건으로 규정하는데, 학부 강의 시간(1학기 3학점)을 교육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45시간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자격증이 학부 강의 하나보다도 적은 교육시간만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자격증이 필기, 면접 등 자격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격은 어떤 형태의 시험도 요구하지 않았다. 실무 및 수련의 경우, 해당 조건을 요구하는 자격은 일부에 불과했으며(16.42%), 자격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자격요건으로 명시한 자격 역시 극소수였다(1.94%). 자격요건 분석을 통하여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거치지 않는 민간자격 및 심리서비스 제공자가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후분석을 통하여 심리학 관련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 및 수련과 보수교육을 모두 명시한 민간자격 중 다수가 공식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아닌 내규로만 정한 곳에서의 교육 및 훈련경험도 대체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사후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넷째, 해외 심리서비스 자격규정을 기준으로 국내 자격을 비교한 결과 민간자격 중 극소수의 자격만이 자격규정에 부합하였다. 해외 자격규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심리학 석박사 혹은 학석사 학위와 더불어 심리학 기초과목 이수를 요구하며, 1-3년 간의 검증된 기관에서의 실습 및 수련경험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자격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심리서비스 제공자로서 거쳐야 할 적절한 하한선을 범으로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 규정을 기준으로 비

표 4. 동일한 자격명 내 복수의 자격요건

자격명	자격번호	학위 요구	실무/수련	시험	보수 교육
상담심리사 (동일 등록명 5건)	2008-0400	상담 관련 석사	개인상담 5사례, 심리평가 10사례를 포함한 그 이상	O	O
	2016-003745	심리 관련 학사	집단상담 참가 10시간을 포함한 그 이상	O	O
	2013-1060	상담 전문학사	X	O	X
	2014-2791	고졸	현장실습 50시간을 포함한 그 이상	O	O
	2014-4772	없음	X	X	X

교했을 때, 연 50인 이상 취득자가 있는 국내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134건 중 2건인 (사)한국심리학회의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사 1급만이 국제 심리서비스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40782명의 연 취득자 중 전체 0.55%에 불과한 223명(중복 인원 포함)만이 해외 자격 기준에 알맞은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수치는 매년 배출되는 대부분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전문적인 서비스가 난립하여 심리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국민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임을 방증한다.

상당수의 심리서비스 유관 상담 및 보호기관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자격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신뢰도 있는 민간 및 국가자격을 가진 전문가만을 채용하지만, 관련 지식 및 검증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엄격한 훈련을 거친 전문가를 훈련되지 않은 ‘심리상담가, 심리치료사’ 자격자로부터 선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담심리사’(등록번호 2008-0400)의 경우, 석사 학위과정, 접수/해석/개인/집단 상담

실습 및 시험통과 후 자격증이 발급되며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요구하는 엄격한 민간자격이지만, 기타 4건의 ‘상담심리사’는 교육과정을 정식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심지어 시험과정 없이도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표 4).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 두 민간자격 중 어떤 것이 적절한 교육/수련 및 자격시험을 거친 ‘상담심리사’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살펴보았듯 민간에 심리서비스 자격을 맡겨 두는 현재의 상황은 전반적인 심리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총 62,469개의 분석대상에 있는 민간자격 가운데 연 50인 이상 취득자가 있는 134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을 분석하였다. 위 자격들의 직무내용, 서비스대상, 그리고 교육연한 및 교육시간, 수련/실습, 시험, 보수교육 등의 자격요건을 포괄적으로 제시했으며, 민간자격을 국제 심

리전문가 자격요건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규제 수준의 미흡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직무내용을 살펴본 결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평가, 심리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심리서비스를 직무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상당수 민간자격이 아동/청소년, 노인 등 취약군 그리고 심리적 장애가 있는 대상자를 서비스대상으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자격 대다수는 자격요건에 관련 학위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평균 32.16시간의 교육만을 요구하였고, 일부 심리서비스 민간자격만이 실습 및 수련, 보수교육을 요구하였다. 즉 대다수의 민간자격이 국제수준의 심리전문가 자격요건에 미달하였다.

본 연구는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 우리나라의 심리서비스 인프라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분야의 자격증 취득요건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민간자격의 전문성을 파악하였다. 심리서비스 영역 이외에도 무분별한 민간자격 발급으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분야의 민간자격 품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키워드 기반으로 필터링하였으며,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교육 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접근 불가능한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심리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에서 제외된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제외조건에 따른 전처리 후 234건의 자격 중 100여 건의 자격이 정보 접근 불가

사유로 배제되었는데, 폐업신고, 홈페이지 삭제 등 관리되지 않은 자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추후 민간자격 당국에서 실질적인 절차를 통해 실제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자격인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면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명확성을 위하여 심리적 문제를 ‘심리적 고통감’의 의미로 한정하였으며,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같이 매체를 기반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상담/치료 관련 자격은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매체상담은 특정 매체의 특징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기에 일반적인 심리서비스를 다루는 자격과의 단면적인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매체상담 관련 민간자격 역시 심리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서/사고 영역의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평가,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심리서비스의 특징을 띠고 있다. 그 자격요건의 양상 역시 심리서비스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예술치료, 독서치료 등 매체상담 영역의 자격요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 기대한다.

심리서비스 민간자격 규제 및 심리서비스 자격 법안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파악된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3,000종 이상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및 관리이다. 자격기본법 제4장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7조),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8조의2). 이후 심리서비스 자격이 신설될 경우, 부적절한 심리서비스가 국민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안전에 영향을 끼침을 인지하여, 자격요건에 엄격한 교육 및 수련과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의 경우에도 자격증 취득요건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별히 기분, 사고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명시하는 민간자격의 경우 더욱 면밀한 관리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직접 수천 여종의 심리서비스 민간자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심리서비스의 유형 및 자격규정이 제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을 규제할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 내실 있는 심리서비스 자격의 유지를 위해서는 살펴본 해외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궁극적으로 심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 유사 직무 및 명칭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포함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Kim 외(2022)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55개의 GPA(Global Psychology Alliance) 및 APPA(Asia Pacific Psychology Alliance) 회원국 중 78%의 국가가 법률로써 직업 명칭을 보호하는 규제(protected title)를 실시하고 있었고 82%의 국가가 필요한 자격 없이는 해당 자격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규제(reserved activities)를 실시하고 있었다. 엄격한 자격요건의 심리전문가만이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만드는 일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기준에 발을 맞추는 움직임

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심리 관련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행복과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다수의 심리(상담)서비스 관련 법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었다.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984호)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39호) 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453호), 상담사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456호(2023.6. 현재). 심리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하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각 법률이 제시하는 서비스의 명칭과 유형, 자격요건의 수준이 다르기에 추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 자격요건이 허술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적합한 훈련을 받지 않은 민간자격자의 심리서비스 제공 활동을 규제할 수 없게 된다. 검증된 전문가가 안전하고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격 수준에 맞추어 최소 석사 수준의 심리학 관련 학위 및 1년 이상의 수련 기간,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심리서비스 전문가 자격요건으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Kim et al., 2022). 즉 심리전문가는 반드시 정신건강 및 정신병리, 행동 및 학습 원리, 생물학적 기초, 연구방법론, 인간발달 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한 필수과목을 학부 수준에서 수학 후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심리치료, 심리평가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 과목의 이수와 함께 검증된 수련기관에서의 강도 높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국가 전문가자격으

로 발급되는 심리서비스 자격 중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심리학 석사 이상, 3년 이상의 법적으로 검증된 기관에서의 수련,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요구하는, 즉 국제 기준을 만족하는 유일한 국가전문자격이며, 위 법안 중 심리사법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만이 국제 수준의 자격요건을 명시한다.

현재 심리서비스 유관 법안들은 모두 계류중에 있으며, 관련 직역단체 간 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합의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심리서비스 관련 법안 구성에 있어서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의 질 향상 및 국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해당 논문에서 명시한 국제 기준의 엄격한 심리서비스 기준 명시와 규제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2022.6.1.). “나랑 놀래?” 심리상담센터 대표의 한밤 중 카톡[이슈&탐사].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132901>
- 김동인 (2019.5.23.). 돈 주면 따는 자격증 3만 4000개.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27>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http://doi.org/10.23844/kjcp.2018.08.30.3.475>
- 김인규, 장숙희 (2019). 국내 상담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교육종합연구, 17(2), 43-61.
<https://doi.org/10.31352/JER.17.2.43>
- 노은빈, 김현진, 최기홍 (2022). 국제 수준의 심리사 자격 기준, 핵심역량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법제화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43-255.
<https://doi.org/10.22257/kjp.2022.8.41.3.243>
- 박중규, 장은진, 정경미 (2022). 심리사법안이 규정한 심리사의 교육 및 수련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71-293.
<http://dx.doi.org/10.22257/kjp.2022.8.41.3.271>
- 박철형, 김영근, 송현구, 라수현 (2022). 국민 마음건강 증진 서비스 법제화 관련 용어 사용 현황에 대한 텍스트마이닝분석: ‘심리상담’, ‘심리서비스’, ‘심리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3(5), 1-19.
<https://doi.org/10.15703/kjc.23.5.202210.1>
- 보건복지부 (2021).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2021).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01&page=1&CONT_SEQ=369296&PAR_CONTENT_SEQ=369295
- 보건복지부, 한국심리학회 (2020). 심리서비스 입법 연구. 보건복지부.
- 원성두, 장은진 (2022). 대한민국 심리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적용 현황, 향후 방향성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1(3), 257-270.
<http://doi.org/10.22257/kjp.2022.8.41.3.257>
- 윤소라, 장진경 (2021). 가족 상담 민간자격증 현황 및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 인문사회 21, 12(2), 913-926.
<http://dx.doi.org/10.22143/HSS21.12.2.64>

- 이내규 (2019. 07. 19). 실태점검 심리상담소가 위험하다 [추적60분]. Mylove KBS.
https://mylovekbs.kbs.co.kr/index.html?source=mylovekbs&sname=mylovekbs&stype=magazine&contents_id=70000000328763
- 장은진, 최진영, 조성민, 권지성, 이은호, 조주성, 김빛나 (2019). 심리지원서비스 자격기준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조성진, 정우석, 허영숙, 한혜정 (2022). 국내 코칭 관련 민간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융합코칭저널, 1(1), 31-59.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36940658>
- 조인식 (2021). 민간자격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제235호).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Nu2T5ueMax&fileName=
- 최유리 (2016.09.08). 상담자 성범죄, 더 이상 안된다. 뉴스앤조이.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idxno=20567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23). 한 눈에 보는 민간자격정보.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 한국직업능력연구원_민간자격취득현황_20220906.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90560/fileData.do?recommendDataYn=Y>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한국직업능력연구원_민간자격등록정보.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75600/fileData.do>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2).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http://kstss.kr/?p=2772>
- 함영훈 (2021. 10. 4). 한국민들 긴 코로나 잘 견딘 이유...심리방역 무려 158만건.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04000158>
- Anderson, C. M., Hogarty, G. E., & Reiss, D. J. (1980). Family treatment of adult schizophrenic patients: a psycho-educational approach. *Schizophrenia Bulletin*, 6(3), 490.
<https://doi.org/10.1093/schbul/6.3.490>
- APA Presidential Task Force on Evidence-Based Practice. (2006). Evidence-based practice in psychology. *The American Psychologist*, 61(4), 271-285.
- Castonguay, L. G., Boswell, J. F., Constantino, M. J., Goldfried, M. R., & Hill, C. E. (2010). Training implications of harmful effects of psychological treatments. *American Psychologist*, 65(1), 34.
<https://doi.org/10.1037/a0017330>
- Edward Watkins Jr, C. (1985). Psychoeducational training in counseling psychology programs: Some thoughts on a training curriculum.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2), 295-302.
<https://doi.org/10.1177/0011000085132007>
- European Federation of Psychologists' Associations. (2013). EuroPsy-the European Certificate in Psychology. *EFPA Regulations on EuroPsy and Appendices*.
<http://www.europsyefpa.eu/sites/default/files/uploads/EuroPsy%20Regulations%20July%202013.pdf>
- Goldstein, G., & Hersen, M. (Eds.). (2000). *Handbook of psychological assessment*. Elsevier.
- Kim, H. S., Yoon, S., Son, G., Hong, E., Clinton,

- A., Grus, C. L., Murphy, D., Siegel, A. M., Karayianni, E., Ezenwa, M. O., Zara, G., Gutiérrez, G., Balva, D., Chey, J., & Choi, K.-H. (2022). Regulations governing psychologists: An international surve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53*(6), 541-552.
<https://doi.org/10.1037/pro0000470>
- McKinney, W. (2010). Data structures for statistical computing in python. *In Proceedings of the 9th Python in Science Conference, 443*(1), 50-56.
<https://conference.scipy.org/proceedings/scipy2010/pdfs/mckinney.pdf>.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a), "Mental health", *Health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Paris: OECD. <https://doi.org/10.1787/f9c64182-en>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1b), *A New Benchmark for Mental Health Systems: Tackling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Mental Ill-Health, OECD Health Policy Studies*. Paris: OECD.
<https://doi.org/10.1787/4ed890f6-en>
- Siegel, A. M., & DeMers, S. T. (2016). Licensing in psychology. In J. C. Norcross, G. R. VandenBos, D. K. Freedheim, & L. F. Campbell (Eds.). *APA handbook of clinical psychology: Education and profess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 101-122.
<https://doi.org/10.1037/14774-007>
- Suzuki, H. (2022).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f professional Psychology Licensure in Japan*. 2022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Forum.
- Tu, S. F., & Jin, S. R. (2016). Development and current status of counselling psychology in Taiwan.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29*(2), 195-205.
<https://doi.org/10.1080/09515070.2015.1128399>
- Wright, A. J., Chávez, L., Edelstein, B. A., Grus, C. L., Krishnamurthy, R., Lieb, R., Mihura, J. L., Pincus, A. L., & Wilson, M. (2021). Education and training guidelines for psychological assessment in health servic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76*(5), 794-801. <https://doi.org/10.1037/amp0000742>

원고접수일 : 2023. 06. 01.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8. 17.
 게재확정일 : 2023. 08. 21.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rivate qualifications regulation for psychological services in South Korea

Euntaek Hong¹⁾ Hyunjin Kim¹⁾ Soohyun Park¹⁾ Kee-Hong Choi^{2,3)†}

¹⁾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Graduate

²⁾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Professor

³⁾KU Mind Health Institute, Korea University, Director

One of the three key elements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includes the expertise of psychological service providers. The qualifications that define these service providers determine the quality of evidence-based psychological services. In Korea, numerous private psychological service qualifications have been inadequately regulated, leading to the provision of non-professional and unethical psychological services to the public. This study aimed to examine private psychological service qualifications in Korea, analyze their specifics including service types and training requirements and compare their regulatory status and prerequisites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qualifications in South Korea encompass a range of psychological services extending beyond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nd are designed to provide psychological services to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children and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However, most psychological service qualifications in Korea were found to specify insufficient education and training requirements, as compared to those regulated in other countr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urgent need for the legal regul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and the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for psychological services with the context of Korean mental health.

Key words : private qualification, psychological services, psychologist, legal regul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 Corresponding Author : Kee-Hong Choi / KU Mind Health Institute, Korea University,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 Email: kchoi.psynlaw@gmail.com

부록 A.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자격의 조건, 사유 및 예시

제외 사유	예시 자격	제외 조건
분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심리적 문제’를 심리적 고통감의 의미에 한정함	[2021-003250] 학습코칭지도사 [2021-004255] 진술분석가 [2022-000725] 경제심리학전문가 [2022-004525] 산업심리분석사	심리학에 기반한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의 ‘심리적 어려움’ 또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직무 미포함
직접적으로 심리학을 활용하는 정도가 매체 상담에서 매우 다양하여 분석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분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함	[2022-002432] 연극심리상담사 [2022-003447] 팻아로마진문지도사 [2022-004692] 스포츠멘탈케어전문지도사 [2022-004588] 원예복지사	매체를 활용한 상담 (미술, 음악, 스포츠, 놀이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자격 내에서 심리적 어려움과 무관하게 진로 탐색을 돕는 자격과 심리적 문제를 돕기 위한 진로 상담 자격의 변별이 어려웠고, 분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함	[2021-000957] 생애실계 전문가 [2021-005863] 진로상담전문가 [2021-005966] 커리어코칭심리사	진로 상담
단순 성격 평가에 가까워 임상 장면에서 심리적 어려움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로 합의가 어려우며, 분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함	[2021-001245] 심리안전지도사 [2021-003625] 재난안전관리지도사 [2021-004879] 부모교육지도사 [2022-000992] 아동인권교육전문가	심리적 어려움과 맞닿아 있지만 직접적으로 심리학적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격 내에서 심리적 어려움이 연관되는 정도가 매우 다양하며,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사례 수가 많아 분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함	[2018-000273] DISC심리상담사 [2021-005307] MBTI교육지도사 [2022-001909] 에니어그램지도사	직무 내용이 제공하는 심리검사가 MBTI, 에니어그램, DISC 등 단순 성격 평가만 포함하는 경우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의 개념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분석의 범위를 좁히기 위함	[2022-005409] 심평성격심리상담사 [2022-005476] 사주명리상담사 [2022-005485] 타로심리상담사	타로, 사주, 명리, 최면 등을 포함하는 경우

부록 B. 데이터 전처리에 사용한 키워드 및 코드

1. 예술치료 관련 키워드

미술	‘미술’, ‘종이접기’, ‘색채’, ‘컬러’, ‘공예’
음악	‘노래’, ‘악기’, ‘음악’
스포츠	‘체육’, ‘캠핑’, ‘스포츠’, ‘골프’, ‘요가’, ‘필라테스’,
기타	‘예술’, ‘요리’, ‘그림책’, ‘포토’, ‘캘리그래피’, ‘보드게임’, ‘독서’, ‘Art’, ‘미용’, ‘아트’, ‘도형’, ‘영화’, ‘연극’, ‘푸드’, ‘원예’, ‘숲’, ‘아로마’, ‘놀이’

2. 타로, 명리, 사주, 성격평가 관련 키워드

타로/명리/사주	‘타로’, ‘명리’, ‘사주’, ‘손금’
단순 성격평가	‘에니어그램’, ‘애니어그램’, ‘MBTI’, ‘DISC’

3. 키워드 기반 필터링 코드 예시

```
import pandas as pd

# 엑셀 파일 읽어오기
df = pd.read_excel("민간자격등록정보.xlsx")

# 특정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행을 필터링하여 새로운 데이터프레임 생성
df_filtered = df[df.apply(lambda row: '심리' in str(row.values) and
any(word in str(row.values) for word in ['상담', '검사', '평가', '치료',
'재활', '교육']), axis=1)]

# 새로운 데이터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
df_filtered.to_excel("민간자격전처리_2 단계.xlsx", index=False)
```

4. 대상군코딩 키워드

집단	조건
일반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키워드 ‘아동’, ‘청소년’, ‘학교’, ‘학생’을 포함할 경우
노인	키워드 ‘노인’, ‘은퇴’, ‘노화’, ‘시니어’를 포함할 경우
장애인	키워드 ‘장애인’, ‘발달지체’, ‘발달장애’, ‘발달 장애’를 포함할 경우

5. 직무 관련 코딩 키워드

자동 코딩 방식을 사용하되, 추후 연구자가 데이터시트 및 자격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정하였다.

집단	조건
검사/평가	검사, 평가
상담/치료/재활	상담, 치료, 재활
교육	교육, 코칭
자문	자문
슈퍼비전	슈퍼비전, 슈퍼비전, 감독
연구/개발	연구, 개발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운영

6. 키워드 기반 one-hot encoding 코드 예시

```
import pandas as pd

# 엑셀 파일 읽어오기
df = pd.read_excel("C:\\Users\\psh73\\Desktop\\pydrill\\coding.xlsx")

# 노인, 아동, 장애인에 해당하는 키워드 정의
senior_keywords = ["노인", "은퇴", "노화", "시니어"]
child_keywords = ["아동", "청소년", "학교", "학생"]
disability_keywords = ["장애인", "발달지체", "발달장애", "발달 장애"]

# 각 행을 반복하면서 키워드를 찾고, 해당하는 컬럼에 값을 기록
for idx, row in df.iterrows():
    for col_idx in range(3, 8):
        if any(keyword in str(row[col_idx]) for keyword in senior_keywords):
            df.loc[idx, '노인'] = '1'
        if any(keyword in str(row[col_idx]) for keyword in child_keywords):
            df.loc[idx, '아동/청소년'] = '1'

        if any(keyword in str(row[col_idx]) for keyword in disability_keywords):
            df.loc[idx, '장애인'] = '1'
        if any(keyword in str(row[col_idx]) for keyword in evaluation_keywords):

df.to_excel('자동코딩완료.xlsx', index=False)
```